

## 공시송달 공고

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법 제29조의2의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. 8. 13.

### 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25. 8. 13. ~ 2025. 8. 29. (16일간)
2. 공고장소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대상 및 내용

예정된 처분의 내용	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	
당사자	성명	김*오
	주소	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**번길 **, ****호(범일동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행위) 위반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(금지행위),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, 29조의2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교육 등의 제공), 제46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)	

#### 4. 유의사항

- 가.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공시송달은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남구청 가족친화과(☎ 051-607-340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귀하

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